

# 소방안전관리 규정

제정 : 2015. 08. 07.

담당 : 시설관리팀(02-950-5560)

## ----- 목 차 -----

제1조(목적)	제2조(적용범위)	제3조(소방안전관리 조직과 책임)
제4조(업무의 분장)	제5조(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)	제6조(소방안전 관리 위원회)
제7조(자위소방대의 조직 운영)	제8조(교육훈련)	제9조(소방점검 등)    제10조(상벌)
제11조(손해배상책임)	제12조(비밀유지의 의무)	제13조(준용)

## 제1장 총 칙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한국성서대학교 소방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화재로 인한 인적, 물적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적용범위)** 본교의 교직원은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.

**제3조(소방안전관리 조직과 책임)** ① 각 부서의 소방안전관리는 부서별 (정)행정본부장, (부)소방 안전 관리자가 책임을 지고 실시한다.

② 본교의 화재예방, 화재사고 진압 및 사후 복구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교내 소속된 부서의 부서장 책임하에 소방안전관리자를 두고, 관련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시설관리팀에 소방안전관리책임자를 둔다.

③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책임자의 지시를 받아 책임구역 내의 소방안전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.

④ 소방관련 시설의 점검·유지·보수·관리업무는 관리처 시설부에서 관장한다.

## 제2장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분담

**제4조(업무의 분장)** ① 소방시설,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, 실험실습실의 점검,유지,보수 등의 관리업무는 시설관리팀에서 관장한다.

② 소방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훈련은 소방안전관리자가 업무를 담당한다.

**제5조(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)** ① 소방관리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을 갖춘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고 그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소방계획서의 작성
2. 자위소방대의 조직
3. 피난시설,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·관리
4. 소방훈련 및 교육
5.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·관리
6. 화기취급의 감독
7.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

②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할 경우 14일 이내 노원 소방서에 선임사실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의 소속, 직위 및 성명을 통보한다.

**제6조(소방안전 관리 위원회)** ① 소방안전관리의 기본방침과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(대책)위원회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총장을 위원장으로 하고, 행정본부장을 부위원장으로 한다.

③ 위원회 위원은 행정본부장, 전공교육부장, 일립교육부장, 사무정보처장, 소방안전관리자는 당연직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교내외 소방안전 관련 교수 및 학생대표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
④ 정기회의는 매년 2월에 개최하고,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 개최한다.

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연간 소방 및 방범 기본계획 심의
2. 규정의 재,개정 및 폐지
3. 주요 소방안전 추진 현황 청취
4. 화재 및 사고 발생기관장으로부터 보고의 청취
5.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

⑥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위원회 관리규정 제4조 내지 제9조에 따른다.

**제7조(자위소방대의 조직 운영)** ① 화재 또는 기타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교내 자위소방대를 조직운영 한다.

② 자위소방대의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은 소방안전관리책임자가 정한다.

### 제3장 교육 훈련 및 소방 점검

**제8조(교육훈련)** ① 모든 교직원은 연1회 이상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.

② 제1항의 소방안전교육은 직접교육 또는 인터넷교육을 통하여 이수할 수 있다.

③ 소방안전관리책임자는 화재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위소방대원 등 소속 구성원에게 소방안전 훈련을 실시한다.

- ④ 제3항의 소방안전훈련으로 기본, 소화, 통보, 피난훈련 등 종합훈련을 연1회 이상 실시한다.
- ⑤ 소방안전관리책임자는 신입생들에게 오리엔테이션 기간 등을 통하여 연1회 이상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한다.
- ⑥ 일립생활관에 입소한 학생은 매 학기 초 1회(년2회) 소방교육 및 훈련을 실시한다.
- ⑦ 교내 부속기간 중 어린이집은 월1회 소방훈련을 실시한다.

**제9조(소방점검 등)** 소방 안전관리자는 「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」 제15조에 따라 각종 검사를 받아야 하며, 관할소방서장의 시정조치 등의 요청이 있을 시 이를 이행해야 한다.

## 제4장 상벌 및 손해배상

- 제10조(상벌)** ① 소방안전관리책임자는 소방안전관리와 진화작업에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표창을 상신할 수 있다.
- ② 소방안전관리책임자는 본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소방안전관리에 태만하여 화재를 발생하게 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.

**제11조(손해배상책임)** 교직원 및 학생, 본교를 출입하는 모든 방문객 등은 화재나 사건 발생시켜 본교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민법과 그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진다.

**제12조(비밀유지의 의무)** 본교의 소방안전 및 방법과 관련하여 직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.

## 제5장 준용

**제13조(준용)**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 소방안전관리상 필요한 사항은 「소방관계법 및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의한다.

## 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08월 07일부터 시행한다.